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관찰물질 측정·공개에 관한 세부 신설(안 제24조의6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법에서 위임한 관찰물질 관련 세부사항 규정

나. 개정 내용

- 관찰물질 고시에 물질명·지정이유(법률규정) 외에 조사위치·주기, 공개 주기를 포함하도록 함
- 관찰물질 측정 결과는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며,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별·물질별 최대값, 최소값, 평균값으로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관찰물질 관련 측정, 공개, 고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 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실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